Ⅱ. IMF 경제 정보

1. 금주의 정책 이슈

□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고금리 정책의 타당성

- IMF 관리 체제 이후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

·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해외 자본 유입 효과는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
· 고금리 정책의 가장 큰 위험은 실물 경제의 내수와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데에 있음

· 20%를 넘는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의 생존 능력이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유망 기업들마저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됨

- 정부는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금리 인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들어 자본의 국내 유입이 줄어들고 해외 유출이 늘어나자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

· 지난 3월말까지 4개월간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화가 유출된 외화를 초과하였으나 4월 들어서는 지난 10여일간 유출된 외화가 유입된 외화를 초과하고 있음

· 정부에서는 외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

· 그러나 외국 자본의 철수는 실물 경제의 침체가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

-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, IMF 체제 이후 가장 악화된 투자 환경을 자금조달 부문으로 지적하고 있음

· 이는 고금리 정책이 금융 부문에서는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, 궁극적으로는 실물 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여 외자 유입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함

□ 구조조정 전문회사와 지주회사

-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 전문회사에게 지주회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간 정부 부처간 논란이 있어 왔음

·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데, 이는 법률(공정거래법 8조;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허용)이 금하고 있는 지주회사 형태를 의미함

·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은 국내외 모든 기업에게 허용되지만 지주회사 설립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,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逆差別적인 성격을 갖게 됨

· 산업자원부는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임

·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2000년 이후에나 지주회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간 표명해 왔음

-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
· 전면적인 허용은 2-3년 후로 예정하고 있으며, 부채비율, 출자 방식 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상호지급보증이 완전 해소된 기업그룹에게만 허용하는 등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

· 따라서 국내 기업에게는 지주회사를 불허하는 역차별적인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음

-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보면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

· 그러나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재매각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는 것과 극심한 자금난을 감안할 때, 공정거래위원회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대기업 그룹의 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

(정 반 석 bsjoung@hri.co.kr ☎724-4045)